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 부담 조례안

의안 번호	2019-2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조건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부담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승인을 받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1) 폐수 등 유입처리의 승인 등의 내용(안 제3조)

2) 배수설비의 설치 통지의 내용(안 제4조)

나.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등의 내용(안 제5조)

다. 폐수 등 배출 신고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51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제1회추경예산 34백만원 확보예정/운영비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8.~12. 27.

나) 예고결과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주식회사 가우정푸드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기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 조례 제정으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귀 기관에 강력한 항의를 하며 친기업적인 방안을 수립 요청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법적의무 사항이며, ○ 조례안 제12조에 기업체의 사용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일부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음.	미반영
KC FEED (케이씨피드)	○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조례 제정은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거창군 직원 채용이 중단되거나 인원감축의 사유가 되므로, ○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군에서 기업지원을 늘려주고 조례 제정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람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비용부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통지) 제3조에 따라 오수·폐수 유입 처리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연결할 때 그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실시 설명서, 배수설비 평면도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결된 배수설비에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군수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원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

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수·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의 오수·폐수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아 처리 시설에 오수·폐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 산출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처리시설 사용료(BS)

$$BS = M \times \left\{ 0.5 \times \frac{BLi}{\sum_{i=1}^n BLi} + 0.5 \times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 1)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2)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 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times Fi \times R$$

- Ei: 시설 설치 비용
 - Fi: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 2/1,000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 BLi: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 1) $BLi = \text{유량}(\text{m}^3/\text{일}) \times [\text{BOD} + \text{COD} + \text{SS} + \text{T-N} + \text{T-P 농도}(\text{mg}/\ell)] / 1,000$
-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F(Li):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i) = a \cdot Qi \times \left(\frac{BODi + CODi}{2} + SSi + T-Ni + T-Pi \right) / 1000$$

- 1) 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 3) a: 유량 누진계수

유 량 (m³/일)	a
$Q_i \leq 200$	1.0
$200 < Q_i \leq 500$	1.1
$500 < Q_i$	1.2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times$ 0.8(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times$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N 30 mg/ℓ (기숙사 40 mg/ℓ)
- T-P 3 mg/ℓ (기숙사 4 mg/ℓ)

[별표 2]

사용료 지원금(감면) 산출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

$$CS = a \times Qi \times 539 \text{원}/m^3$$

가. CS: 월간 사용료

나. a: 누진계수

(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다. Qi: 업소별 월간 배출유량

라. 539: 연간유지관리비 252,285,000원 / (30일*12개월)=700,792원/일
700,792원/일 ÷ 1,300m³/일=539원/m³

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

가.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text{개별 사업장 시설개선충당금} = \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 \times \frac{Qi \text{ m}^3/\text{일}(\text{개별사업장 배출유량})}{\sum Qi \text{ m}^3/\text{일}(\text{전체사업장 배출유량})}$$

나.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의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의 시설개선충당금 항목을 적용한다.)

다. 배출유량: 사용료 산출기준[별표 1]의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의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3.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오수배출업소의 사용료 지원금은 거창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에 따른 요금과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2. 시설개선충당금 산출공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수·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기준(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출공식)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건물면적 (동별)		부 지 면 적	m ²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 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명세서 1부. 5. 오수 및 폐수 배출량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 승인내용 1.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 2.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mg/ℓ, COD: mg/ℓ, SS: mg/ℓ, T-N: mg/ℓ, T-P: mg/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 4.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kg ○ 조건: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담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 출	사용료 부담지원	34,000	45,000	300,000	300,000	300,000	979,000
	소계	34,000	45,000	300,000	300,000	300,000	979,000

3. 관련 의견

기업체의 사용료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리시설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 60퍼센트 도달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일부 지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임영수